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27호의2 서식]

긴급임시조치 통보서(가정폭력)

행위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거			

[□]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

[□]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

[□]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(전화, 이메일,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)

※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긴급임시조치 결정시 지체없이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며,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.

사법경찰관(리) (인)